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7. 5 선고 2022나3679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영삼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

담당변호사 김기한, 문충식, 정동윤

피고, 피항소인 1.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세종

담당변호사 유성훈, 윤현식

2.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화우

담당변호사 최유나

변 론 종 결 2023. 5. 3.

판 결 선 고 2023. 7. 5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22. 선고 2021가단5167782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위적으로, 사천시 D 목장용지 27,671㎡에 대하여,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2020. 12. 29.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1년 1월 20.일 제16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예비적으로,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

가.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- 1)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고, E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데,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처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채무자 E를 대위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(주위적 청구).
- 2)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B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공매절차를 통해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, 채무자인 피고 B이 무자력상태에 있다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무자력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이 사건

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나.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1) 원고 주장의 요지

피고 B은 E의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① 이해관계인에게 이행최고 내지 통지를 하지 않았고, ② 피고 C 이외 다른 대중에 공고하지 않았으며, ③ 같은 날에 시간 단위로 공매회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매 시스템인 ‘온비드’와 같은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하지 않았다. 피고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E의 재산을 피고 C에 염가로 매각하였다.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반사회적 법률행위 내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.

2) 구체적 판단

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18,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①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피고 B이 공매절차를 진행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해관계인에게 별도의 이행최고 내지 통지를 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다. 또한 우선수익자인 피고 C이 피고 B에게 공매를 요청하였고, 후순위 수익자 겸 위탁자인 E가 공매에 대한 동의서(을가 제6호증)를 제출한 이상 별도의 통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.

② 상법 제289조 제3항에서 ‘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.’라고 정하고 있고, 피고 B의 정관 제4조에 의하면 ‘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H신문에 게재한다.’라고 정하고 있다. 이에 따라 피고 B은 공매공고를 ‘회사 홈페이지’ 및 ‘H’에 게재한바 이와 같은 공매공고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.

③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8조 제2항에서 ‘신탁부동산의 처분은 본 계약 제18조 내지 제21조에 불구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’고 정하고 있고, 달리 공매 장소나 하루에 진행할 수 있는 입찰 횟수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. 따라서 피고 B이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을 피고 B의 지정 입찰실에서 하루에 5회 기일을 정하여 공매 진행을 한 것이 위법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

④ 위와 같이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 사이에 통정 허위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강재철, 판사 권가희, 판사 곽새롬